

2. 建設共濟組合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600號 1993. 12. 10

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전문건설업자를 제외한다)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대신 지급할 금액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조합원의 채무에 대하여 조합이 보증의무를 지는 상대방을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4조중 “지부”를 “지점”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지부”를 각각 “지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입찰보증·계약보증·차액보증·손해배상보증·훼손보수보증·선지급보증·담보기성금보증 및 하도급보증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
2. 건설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5. 조합원이 건설업경영 및 시공기술의 개선·향상과 이와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6의 2.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이용과 관련한 서비스에 관한 사업

제8조제2항을 동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중전 제2항)중 “제1항제6호의 시설”을 “제1항제6호 및 제6호의2의 시설등”으로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내용·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3항중 “입질”을 각각 “질권설정”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동항제2호 및 제3호”를 “동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경과한 때

5. 준비금의 출자전입시 단좌가 발생한 때

제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금 중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⑤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처분금에 대한 청구권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감소한다.

제12조제3항중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를 “매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로 한다.

제13조의 제목“(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를“(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좌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의결권없는 좌수는 총출자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제2항중 “11인”을 “13인”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6인”을 “8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정족수)”를“(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사장·전무이사·이사 및 감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사장·전무이사·그 이사 및 그 감사는 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8조제2항중 “지부”를 “지점”으로 한다.

제2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6(자금의 조달) ①조합은 그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과 준비금
2. 금융기관 또는 조합출자회사등으로부터의 차입금
3. 자산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은 출자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채권 및 금융기관이 채무이행을 보증한 유가증권의 매입

②제1항의 금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3(신용에 의한 보증등)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그 재무상태등을 평가하여 보증 및 용자를 실시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 및 제4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구상권의 행사)조합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보증채권자는

지체없이 조합의 구상권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조합에 송부하고 그 구상권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준조합원)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에 필요한 용역 및 기자재를 제공하는 사업자 기타 건설업에 관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사업(보증을 제외한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조합원에게 가입금 및 경비등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42조제1항중 “사용료”를 “사용료등”으로 한다.

제44조중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벌칙)”을 “(과태료)”로 하고, 동조본문중 “벌금”을 “과태료”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4항·제25조·제26조·제28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조합의 임원
3. 제28조제2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등의 기재·비치 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조합의 임원
4.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장의 출입이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별 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후 지급의 무가 발생한 처분금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증원되는 운영위원회 위원을 최초로 선임하는 경우 위원의 임기만료일은 이 법 시행당시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일과 같이 한다.

□ 개정이유 □

국민경제에서 건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와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진전 등 대내외적 건설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도권 금융지원이 미흡한 건설업계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보증 및 용자제도의 개선 등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체계 및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현재는 보증의 대상을 건설공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고 그 종류 및 내용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새로운 보증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어려웠는바, 앞으로는 보증사업의 범위를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조합이 금전적지급을 담보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한편, 구체적인 보증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여 조합원에 대한 보증업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2조 및 제8조).
- 나. 조합은 여유자금으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채권 및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30조제1항).
- 다. 현재는 보증 및 용자한도를 조합원에게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합원의 재무상태 등을 평가하여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37조의3).
- 라. 현재는 건설업자만 조합원이 되도록 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건설업과 관련된 사업자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준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건설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법 제41조의2).

〈법제처 제공〉